

일자리 창출 계획서(법인사업자용)

※ 해당되는 []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1. 신청인의 인적사항 (본점 기본사항 기재)

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명(상호)	
대표자		사업장 소재지	
업종	/	전화번호	사업연도 ()월 결산법인
2017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	()원	중소기업여부	[] **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**
		청년창업여부*	[] 청년친화강소기업여부** []

* '13.1.1.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, 최대 6년 한도)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써 최대주주(출자자)

**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

2. 2019년 근로자 고용 계획

구분	인원	기준	
① 2018년 상시 근로자 수(기준)	명	• '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	
② 2019년 상시 근로자 수(계획)	명	• '19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	
③ 증가인원 수(②-①)	명	• 최소 1명 이상	
④ 청년 근로자수	ⓐ 2018년	명	• '18년 12월 말 (예상)인원을 기재
	ⓑ 2019년	명	• '19년 12월 말 (예상)인원을 기재
	ⓒ 증가(ⓑ-ⓐ)	명	•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, 음수는 0으로 봄
⑤ 증가비율 $((\text{③}+\text{ⓒ})/\text{①})\times 100$ 단,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$(\text{③}\times 2)/\text{①}\times 100$	%	•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%, 수입금액 3백억 원~1천억 원 미만은 4%이상 이어야 함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	

※ 상시근로자 수 계산(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
사업연도	해당(직전)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⑬ 합계	⑭ 개월 수	⑮ 상시 근로자수 (=⑬÷⑭)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
2018년															
2019년															

3.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:

2019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18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이사)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무서장 귀하

일자리 창출 계획서(개인사업자용)

※ 해당되는 []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1. 신청인의 인적사항 ('17귀속 기준 주사업장 기본사항 기재)

사업자등록번호		상 호	
대표자		사업장 소재지	
업 종	/	전화번호	
2017귀속 신고수입금액 (전체 사업장)	()원	중소기업여부	[]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
		청년창업여부*	[] 청년친화강소기업여부** []

* '17귀속 기준 주사업장이 13.1.1이후 개업자로서 개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, 최대 6년 한도)인 사업자

**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

2. 2019년 근로자 고용 계획

구 분	인 원	기 준	
① 2018년 상시 근로자 수(기준)	명	• '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	
② 2019년 상시 근로자 수(계획)	명	• '19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	
③ 증가인원 수(②-①)	명	• 최소 1명 이상	
④ 청년 근로자수	㉓ 2018년	명	• '18년 12월 말 (예상)인원을 기재
	㉔ 2019년	명	• '19년 12월 말 (예상)인원을 기재
	㉕증가(㉔-㉓)	명	•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, 음수는 0으로 봄
⑤ 증가비율 ([(㉓+㉕)/㉓]*100) 단,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 기업은 (㉓*2)/㉓*100	%	• 수입금액 3백억 원 미만은 2%, 수입금액 3백억 원~1천억 원 미만은 4%이상 이어야 함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	

※ 상시근로자 수 계산(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
사업연도 (귀속)	해당(직전)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⑬ 합계	⑭ 개월 수	⑮상시 근로자수 (=⑬÷⑭)		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		
2018																	
2019																	

3.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:

2019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18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무서장 귀하